

2019 경기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4차 지원사업 공고

경기도민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및 사회적 통합을 구현하고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거하여 『2019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4차 지원 사업』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9월 9일

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

1 사업개요

- 추진목적 :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 가치증진을 위한 지원사업
- 총사업비 : 250,000(천원)
- 지원 단체 자격
 - 경기도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
 - 경기도내 31개 시군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(단체회원 10인이상)
 - **2019 도민이전하는자원봉사 1~3차 지원사업 선정단체 지원불가**
- 단체별 신청액 : ~ 5,000천원
- 사업추진기간 : 2019. 11. 1 ~ 2019. 11. 30 (*기간외 사업불가)
- 공모분야 : 소외계층 김장나눔 자원봉사(단일분야, 다른 공모분야 지원불가!)
- 추진 절차
 - 공모 및 접수 : 9. 9(월) ~ 9. 20(금) 2주간
 - 심사위원회 : 9. 27(금) 예정
 - 선정단체 공지 : 9. 30(월) 홈페이지 발표
 - 안내교육(교부안내 및 회계교육) : 10. 8(화) 13:00~16:00
 - 선정단체 교부신청 : 10. 18(금)까지
 - 교부일 : 10. 31(목)
 - 최종결과보고 제출 : 12. 10(화) 우편발송 도착

2 신청서 및 제출서류

- 공고 및 접수기간 : 9. 9(월) ~ 9. 20(금) 18:00까지
- 접수 방법
 - 이메일 접수 : ggvc2561365@hanmail.net(우편접수불가)
 - 메일 제목 및 파일명에 반드시 “단체명”으로 표기
 - 제출서류(①~⑥) 모든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, 심사대상에서 제외)

순번	제출서류		발급기관
1	비영리민간단체증 (*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은 해당없음)		경기도
	자원봉사단체등록증(또는 자원봉사단체확인증)		시·군 자원봉사센터
2	지원사업신청서	서식 1	-
3	사업계획서	서식 2	-
4	단체현황	서식 3	-
5	단체회원명부	서식 4	10인이상 지원가능
6	개인정보활용동의서	서식 5	-

- ▶ 「제출서류 1」은 비영리민간단체증 또는 자원봉사단체등록증 중 선택 제출가능
- 문 의 : 활동지원팀 이선경 대리 031)256-1365(내선 601)

- 예산 편성 기준
 - 편성항목 : 김장재료(배추 외), 활동물품, 식대비 - 3개 항목으로만 편성 가능
※한가지 항목으로 보조금, 자부담 분할편성 불가
 - 식대비 편성 : 봉사자 1인당, 최대 8,000원까지 지원 가능
 - 자부담 의무 : 보조금 신청액의 10% 자부담 필수
 - 산출기초 : 모든 항목은 대상가구 혹은 인원으로 산출
 - 지출방법 : 체크카드 사용만 가능(계좌이체 불가)
 - 엄수사항 : 카드결제 원칙으로, 구매 내역 표기된 영수증만 인정 가능

3 유의사항

- 자부담은 보조금과 동일한 예산집행기준으로 지출해야 함
- 자부담은 보조금액의 10%이상 책정 필수이며 미 이행시 심사에서 제외 됨
- 선정된 단체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 및 행사에 의무참석 필수
-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진행방법이 변동될 경우 사업종료 한 달 전까지 변경승인 필수
- 선정된 이후에 추가 요청 자료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(미제출시 선정취소 및 반환조치)
-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공개·반환하지 않으며,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
- 선정된 단체는 기한 내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, 제출기한 초과 시 교부되지 않음

4 지원 제외 대상

- 전년도 최종평가 「하」, 「부적격」 및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
- 금년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공모사업 1-3차 선정단체 및 교부 후 포기단체
- 지원단체의 자격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취소된 단체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사대상에서 제외
-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
-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
- 이미 중앙부처·도·시군(소속 공공기관, 시·군자원봉사센터 등 포함)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
- 자산성 성격(밥솥, 전자렌지 등) 지원 사업
- 단체의 정기총회, 특정정당 및 종교단체 등의 사업
- 사업성격, 수혜대상의 불분명하거나 자원봉사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
- 술, 담배와 같은 불필요한 것을 구입하여 사업비를 낭비하는 사업 등

5 기타 사항

- 승인절차 없이 진행한 경우 사업비 환수조치
- 서식)경기도자원봉사홈페이지 <http://www.ggvc.or.kr> 공지사항 활용
- 자세한 사항은 선정단체 안내교육에서 공지 예정